# 공제계약신청서

## 1. 업체 현황

법인명(상호)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대 표 자	김충현
법인등록번호	110111-4058354	사업자등록번호	220-87-79209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록 번 호	서울-2010-제52호	전 화 번 호	02-6233-7924
본점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광나	루로 130, 7층(성수동	-1가, 서울숲IT캐슬)
홈 페 이 지	www.borampeople.co.kr	팩 스 번 호	02-6233-7919
설 립 일	2009년 03월 17일	자 본 금	1,578,960,000원

공제계약	성 명	김학명	전화번호	02-6233-7924
담 당 자	직 위	과장	E-mail	hakmenge@boram.com

### 2. 공제한도 신청(보증내용)

(단위 : 천 원)

선수금 보증한도 신청금액	100,929,229
신용평가율 (%)	95%
①산정(필요) 담보금액	36,750,866
②기 납부담보금액(출자포함)	36,223,196
③납입예상 담보금액 (①-②)	527,670

※ 담보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463537-01-012908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을 신청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신청인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표 보았인감)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 공제계약서(共濟契約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이하 "공제계약자"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및 적용규정】

- ① 이 계약은 조합이 공제계약자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계약자와 선 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계약에 조합의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선수금 신고 업무 지침」을 적용한다.

#### 제2조【공제계약 기간 및 공제한도액】

- ① 이 계약의 공제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1년간)로 한다.
- ② 이 계약의 공제한도액(「공제규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한도액을 말한다) 은 금 이천일십 팔석 2천팔백 사십오만 팔천 2번 원(₩ 201,858,458,500 )으로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에 따라 매 분기 초 공제한도 액을 조합에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공제한도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합에 공제한도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 【공제계약의 체결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 적격 심사 결과 공제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제계약자와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제5조 제1항 각호의 서류
  - 2. 공제계약자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 현황
- ②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공제계약 적격 심사를 거쳐 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조합에 알리고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경영권 이전 또는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수도
- 2. 합병, 분할
- 3. 영업의 양수도
- 4. 중요자산의 처분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⑤ 공제계약자는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하는 사유 발생일 전에 조합과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공제계약자 또는 이 계약을 승계한 상조회사는 조합이 이 계약 계속 여부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조합의 공제계약자가 아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조합에 신고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4조【공제계약 해지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계약을 중지할 수 있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공제계약자가 유예기간까지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못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공제계약자가 선수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4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3.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와 공모하여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조합경영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 5. 공제계약자가 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현황을 1개월 이상 전산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전산 입력한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8. 공제계약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

- 9, 조합이「공제규정」제11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공제계약의 계속 여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1.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요구사항 및「공 제규정」제12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 공제계약자가 법, 조합의 관련 규정, 공제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 13. 「공제규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자를 조사한 결과 공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 공제계약자가 기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지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발급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금융결제 원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공제계약자와 공체호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제(控除)】

조합은 공제계약자(「공제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이미 납부한 출자금, 담보 등 정산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소비자피해보상금, 법무비용,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분담금, 기타 손해금 등을 공제(控除)하여 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충당한다.

- 1.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2. 공제계약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3. 공제계약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 시 결정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5.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제6조 【담보】

- ① 공제계약자(이하「공제규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이하 "선수금 보전금액" 이라 한다)에 상응 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는 출자 금, 현금, 부동산 등으로 제한한다. 단, 최초 공제계약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 담 보제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는 선수금 보전금액에 「공제규정」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금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담보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 종류에 따라 담보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출자증권과 현금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출자금 + 현금)=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출자증 권담보제공 비율) 출자금} ÷ 출자증권담보제공 비율 × 현금담보제공비율] + 출자금
  - 2. 현금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현금) =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현금 담보제공비율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분기 말마다 담보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에게 채권 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요구내용 대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이 한다.
  - 1. 조합이「공제규정」제6조 제5항 공체계약 계속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계 약자의 기존 담보 외 추가 담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3.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유관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4. 기타 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⑤ 조합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가 신고하는 예상선수금에 따라 담보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다음 분기까지 반환을 유 보할 수 있다.
- ⑥ 공제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담보금액을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3년 이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담보는 총 담보금(출자금 및 현금 담보)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부동산 담보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60%만을 인정한다.

#### 제7조 【담보물 제공 등】

- ① 공제계약자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조합이「공제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소비자피해보상금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채권(이하 "이 계약 구상채권" 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계약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금 명목으로 금 삼백육십칠억요천 광십속안육천 원(₩ 36, 150, 866, 000 , 이하 "이 계약 담보금" 이라 한다)을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계약 담보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세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 계약 담보금의 반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 ④ 담보금액에 대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 제8조 【연대보증】

- ① 공제계약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피해액(이 계약 구상채권 금액, 법무비용 등) 일체를「공제규정」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될 경우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인 개인의 재산(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 체결과 함께 공제계약자의 대표자와 대주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 기간 중 연대 보증하였던 대 표자와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가 연대보증 의무를 인수(병존적인수)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기간 중「공제규정」제6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해당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조합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계속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공제계약자가 제1호에 따라 이 계약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 를 하는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연 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또한,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도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 3.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와 연대보증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 4. 「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해당사유 발생에 따른 공제계약자의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 이로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변제에 대하여 공제계약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⑥ 조합은 연대보증인의 자격 심사과정에서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대표자 및 대주주 외에 다른 임원, 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게 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의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는 「공제규정」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9조 【공제계약자의 담보금액 반환 등】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조합에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공제계약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담보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하 "상조서비스 행사" 라고 한다)을 완료한 경우
  - 2.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 3.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거나 담보금액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단, 조합은 담보금액을 공제계약자가 새로 계약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 직접 송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와 관련 있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담보금액 반환요청서
  - 2. 담보금액 반환요청 관련 수혜자 명단
  - 3.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상 조서비스 행사 관련 영수증, 서비스 이행확인서 등의 서류 또는 수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
  - 4.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혜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송금내역(단,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0원인경우 이를 증명하는 산출내역)
  - 5. 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였거나 또는 담보금액을 제 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0조【공제료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 [별표 2] 공제료 산출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제료의 합산 금액을 1개월분 공제료로 책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공제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을,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이 300,000원 이하인 경우 300,000원을 공제료로 책정한다.
- 1. 보증공제료 : 매월 말 기준 누적선수금 × 보증공제료 요율 ÷ 신용평가율
- 2. 운영공제료 : 조합의 당해연도 지출예산총액/12 × 직전월 '조합원의 보증공제료' 비율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이자 =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 연체요율(20%) × 연체일수 ÷ 365

#### 제11조 【공제관련 비용 등 부담】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 후 공제계약자와 관련한 조합의 공제업무를 위하여 조합이 부담한 변호사 위임비용, 조합이 공제계약자 보고의무의 충실 또는 공제계약자 보고내용의 진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인회계사 위임비용, 조합이 각종 감사, 검사, 실사 등에 지출한 비용, 이 계약에 따른 각종 공고 및 공시 비용, 출장경비 등 제반 필요경비(공제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공제관련 비용" 이라 한다)를 부담하기로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이 해지된 호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관련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를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 지급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한다.

#### 제12조 【공제계약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 함께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 부계약으로 판매한 모든 상품의 선수금 보전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의 내용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조합 전산시스템과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사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환경
  - 2.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조합 전산시스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건별 공제번호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 3.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선수금 보전금액 및 소비자의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조합 전산시스 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환경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 규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운영 외주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

- ① 공제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제3의 외주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조합은 필요할 때 공제계약자의 제3의 외주업체에 공제계약자의 소비자별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보, 선불식 할부계약 판매원별 지급수수료 등 조합의 공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3의 외주업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처리】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 【공제계약 내용의 확인】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 및 담보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16조 【조합 공제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①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이전, 소비자 사이의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공제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제계약자 통보의무】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조합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제계약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3. 공제계약자의 부도, 워크아웃, 회사정리, 파산, 기타 재산 상태가 중대하게 나 빠지거나 기타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의 영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해산, 청산,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담보물의 양도, 기타 공제계약자의 영업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5. 공제계약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 절차가 개시되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 권자에 의한 보전처분 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기관으 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자신의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의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 8. 공제계약자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제계약자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9.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 및 제재를 받는 경우
- 10. 기타 조합의 법률적인 책임이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유지의무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 이행과정, 계약의 완료 후에도 어떠한 경우로든 알게 된 조합의 모든 정보(재무상태, 경영자료, 규정 등)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조합의 허락 없이 관련 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공제계약자의 임원, 직원과 그의 지휘 범위 내에 있는 자(피고용자 등 포함),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 또는 공제계약자와 제3 자 사이 분쟁(사실상, 법률상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분 쟁 해결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9조【주소변경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의 명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출한 인감을 분실, 멸실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0조 【서명 인감의 대조 등】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미리 신고한 서명, 인감 등과 대조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신고사항 등을 처리한 때에는 공제계약자의 서명, 인감에 대한 도용, 위조, 변조,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 【양도·질권설정 등 금지】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승낙 없이 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및 담보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제22조 【공제계약자의 변경】

- ① 공제계약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회원 이전 등)를 제3자에 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23조 【공제계약의 승계 거부】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를 하는 제3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체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제24조【공제계약의 무효】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졌을 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25조【손해의 조사】

- ①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수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협조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협조 또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조합, 공제계약자,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제27조【보칙】

-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조합의 예상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공제계약 기간 중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되는 경우 이 계약에서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에 따라 규정한 내용은 개정된 정

관, 공제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조합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29조 【공제계약자의 동의 및 날인】

공제계약자는 아래 [표] 기재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였기에 인감을 날인한다.

동 의 사 항	인감날인
1.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 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선수금 신고업무지침」을 수령 하였습니까?	
2. 위 1.의 규정, 지침,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공제계약 기간 중 위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까?	

2025년 06월 23일

#### 한국상조공제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이 사 장 (법인인감)

#### 공제계약자(회사명)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金T캐슬 7층 대표이사 김 충 현 (법인인감)

## 공제계약서(共濟契約書)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이하 "공제계약자"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 ① 이 계약은 조합이 공제계약자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계약자와 선 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계약에 조합의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선수금 신고 업무 지침」을 적용한다.

#### 제2조 【공제계약 기간 및 공제한도액】

- ① 이 계약의 공제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1년간)로 한다.
- ② 이 계약의 공제한도액(「공제규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한도액을 말한다) 은 금 이전 양식 딸리 오천 팔리 사성오만 포천 오백 원(₩ 201,858,458,500 )으로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에 따라 매 분기 초 공제한도 액을 조합에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확인 후 승인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공제한도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합에 공제한도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 【공제계약의 체결 등】

- ① 조합은「공제규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 적격 심사 결과 공제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제계약자와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제5조 제1항 각호의 서류
  - 2. 공제계약자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 현황
- ②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공제계약 적격 심사를 거쳐 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조합에 알리고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경영권 이전 또는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수도
- 2. 합병, 분할
- 3. 영업의 양수도
- 4. 중요자산의 처분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⑤ 공제계약자는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하는 사유 발생일 전에 조합과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공제계약자 또는 이 계약을 승계한 상조회사는 조합이 이 계약 계속 여부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조합의 공제계약자가 아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조합에 신고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4조【공제계약 해지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계약을 중지할 수 있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공제계약자가 유예기간까지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못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공제계약자가 선수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부를 연체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4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3.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와 공모하여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가)압류 등 법 적 절차가 진행되어 조합경영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 5. 공제계약자가 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현황을 1개월 이상 전산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전산 입력한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8. 공제계약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

- 9. 조합이「공제규정」제11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6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공제계약의 계속 여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1.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요구사항 및「공 제규정」제12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 공제계약자가 법, 조합의 관련 규정, 공제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 13. 「공제규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자를 조사한 결과 공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 15. 공제계약자가 기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지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발급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금융결제 원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공제계약자와 공제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제(控除)】

조합은 공제계약자(「공제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이미 납부한 출자금, 담보 등 정산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소비자피해보상금, 법무비용,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분담금, 기타 손해금 등을 공제(控除)하여 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충당한다.

- 1. 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는 경우
- 2. 공제계약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3. 공제계약자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 시 결정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 5.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제6조【담보】

- ① 공제계약자(이하「공제규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이하 "선수금 보전금액" 이라 한다)에 상응 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는 출자 금, 현금, 부동산 등으로 제한한다. 단, 최초 공제계약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 담 보제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는 선수금 보전금액에 「공제규정」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금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담보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 종류에 따라 담보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출자증권과 현금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출자금 + 현금)=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출자증 권담보제공 비율) 출자금} ÷ 출자증권담보제공 비율 × 현금담보제공비율] + 출자금
  - 2. 현금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 담보금액(현금) = 선수금 보전금액 × 담보금적용 비율 × 현금 담보제공비율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분기 말마다 담보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에게 채권 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요구내용 대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조합이「공제규정」제6조 제5항 공제계약 계속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계 약자의 기존 담보 외 추가 담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3. 공제계약자를 상대로 유관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4. 기타 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⑤ 조합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계약자가 신고하는 예상선수금에 따라 담보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다음 분기까지 반환을 유 보할 수 있다.
- ⑥ 공제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담보금액을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3년 이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담보는 총 담보금(출자금 및 현금 담보)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부동산 담보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60%만을 인정한다.

#### 제7조【담보물 제공 등】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계약 담보금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세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조합이 공제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 계약 담보금의 반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 ④ 담보금액에 대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 제8조 【연대보증】

- ① 공제계약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피해액(이 계약 구상채권 금액, 법무비용 등) 일체를「공제규정」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참임자야 한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중지·해지될 경우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인 개인의 재산(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 체결과 함께 공제계약자의 대표자와 대주주는 개인 자격으로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 기간 중 연대 보증하였던 대표자와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가 연대보증 의무를 인수(병존적인수)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기간 중「공제규정」제6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해당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제계약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조합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계속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밖에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공제계약자가 제1호에 따라 이 계약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 를 하는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또한,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도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 3.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전 대표자 및 대주주는 해당사유 발생 후 대표자 및 대주주와 연대보증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 4. 「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해당사유 발생에 따른 공제계약자의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공제규정」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후임 대표자와 후임 대주주는 이로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은 공제계약자가「공제규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 변제에 대하여 공제계약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⑥ 조합은 연대보증인의 자격 심사과정에서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대표자 및 대주주 외에 다른 임원, 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게 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의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는「공제규정」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9조 【공제계약자의 담보금액 반환 등】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조합에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은 공제계약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담보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혜차에게 재화 등의 공급(이하 "상조서비스 행사" 라고 한다)을 완료한 경우
  - 2.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 3.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거나 담보금액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단, 조합은 담보금액을 공제계약자가 새로 계약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 직접 송금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호와 관련 있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제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담보금액 반환요청서
  - 2. 담보금액 반환요청 관련 수혜자 명단
  - 3.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상 조서비스 행사 관련 영수증, 서비스 이행확인서 등의 서류 또는 수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
  - 4. 수혜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혜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되 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송금내역(단,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0원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산출내역)
  - 5. 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계약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하였거나 또는 담보금액을 제 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0조【공제료 등】

- ① 조합은 공제규정 [별표 2] 공제료 산출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제료의 합산 금액을 1개월분 공제료로 책정하여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공제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을,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이 300,000원 이하인 경우 300,000원을 공제료로 책정한다.
- 「1」보증공제료 : 매월 말 기준 누적선수금 🗙 보증공제료 요율 🛨 신용평가율
- 2. 운영공제료 : 조합의 당해연도 지출예산총액/12 × 직전월 '조합원의 보증공제료' 비율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이자 = 납부하지 아니한 공제료 × 연체요율(20%) × 연체일수 ÷ 365

#### 제11조 【공제관련 비용 등 부담】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 후 공제계약자와 관련한 조합의 공제업무를 위하여 조합이 부담한 변호사 위임비용, 조합이 공제계약자 보고의무의 충실 또는 공제 계약자 보고내용의 진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인회계사 위임비용, 조합이 각종 감사, 검사, 실사 등에 지출한 비용, 이 계약에 따른 각종 공고 및 공시 비용, 출장경비 등 제반 필요경비(공제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공제관련 비용"이라 한다)를 부담하기로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이 해지된 후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관련 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를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 지급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한다.

#### 제12조【공제계약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 함께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 부계약으로 판매한 모든 상품의 선수금 보전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의 내용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조합 전산시스템과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사이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환경
  - 2.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조합 전산시스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건별 공제번호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 3.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선수금 보전금액 및 소비자의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조합 전산시스 템에 관련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환경
-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 규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 【공제계약자 전산시스템 운영 외주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

- ① 공제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제3의 외주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조합은 필요할 때 공제계약자의 제3의 외주업체에 공제계약자의 소비자별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보, 선불식 할부계약 판매원별 지급수수료 등 조합의 공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3의 외주업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호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처리】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피해 가 우려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제계약 내용의 확인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체계약자에게 공제료 및 담보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16조 【조합 공제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① 조합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제계약자의 선수금 납입,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해제·이전, 소비자 사이의 양도양수, 청약철회, 상조서비스 행사 등 공제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자는이에 응해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제계약자 통보의무】

- ①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조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수혜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조합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제계약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3. 공제계약자의 부도, 워크아웃, 회사정리, 파산, 기타 재산 상태가 중대하게 나 빠지거나 기타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4. 공제계약자의 영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해산, 청산,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담보물의 양도, 기타 공제계약자의 영업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5. 공제계약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 절차가 개시되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 권자에 의한 보전처분 절차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기관으 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 6. 공제계약자가 자신의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 7. 공제계약자의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 8. 공제계약자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제계약자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9.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 및 제재를 받는 경우
- 10. 기타 조합의 법률적인 책임이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유지의무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 이행과정, 계약의 완료 후에도 어떠한 경우로든 알게 된 조합의 모든 정보(재무상태, 경영자료, 규정 등)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조합의 허락 없이 관련 정보를 계약 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공제계약자의 임원, 직원과 그의 지휘 범위 내에 있는 자(피고용자 등 포함),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 ③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공제계약자는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 또는 공제계약자와 제3 자 사이 분쟁(사실상, 법률상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분 쟁 해결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9조【주소변경 등】

- 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의 명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출한 인감을 분실, 멸실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0조 【서명 인감의 대조 등】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미리 신고한 서명, 인감 등과 대조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신고사항 등을 처리한 때에는 공제계약자의 서명, 인감에 대한 도용, 위조, 변조,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양도·질권설정 등 금지】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승낙 없이 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및 담보물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제22조 【공제계약자의 변경】

- ① 공제계약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회원 이전 등)를 제3자에 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나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23조 【공제계약의 승계 거부】

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를 하는 제3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계약 체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 제24조 【공제계약의 무효】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졌을 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25조【손해의 조사】

- ①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수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협조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협조 또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조합, 공제계약자, 수혜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제27조【보칙】

-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조합의 예상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 지침,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공제계약 기간 중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되는 경우 이 계약에서 조합의 정관, 공제규정에 따라 규정한 내용은 개정된 정

관, 공제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조합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29조 【공제계약자의 동의 및 날인】

공제계약자는 아래 [표] 기재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였기에 인감을 날인한다.

동 의 사 항	인감날인
1. 「공제규정」,「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예상 선수 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선수금 신고업무지침」을 수령 하였습니까?	
2. 위 1.의 규정, 지침,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을 들었습니까?	
3. 공제계약 기간 중 위 규정,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까?	

2025년 06월 23일

#### 한국상조공제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이 사 장 (법인인감)

#### 공제계약자(회사명)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T캐슬 7층 대표이사 김 충 현 (법인인감)

# 담보 제공 명세서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는 공제계약을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담보금액을 제공합니다.

담 보 종 류	금 액
출자증권	35,133,196,000원
현 금	1,090,000,000원
부 동 산	527,670,000원
합 계	36,750,866,000원

※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025년 06월 23일 신청법인 보람상조피플 주식하나 및 인인감)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 연 대 보 증 서

상 호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7층(성수동1가, 서울숲IT캐슬)

- 1.상기 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 선수금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상기 회사의 공제사고에 의해 발생한 공제조합의 피해금액 일체 (구상금 청구, 법무비용 등)에 대하여 아래의 연대보증인(들)이 연대 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2. 또한. 아래의 연대보증인(들)은 상기 회사의 공제계약 중지 · 해지 시 상기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이 연대보증인의 개인재산(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제계약서 제8조 연대보증)
- 3. 만약. 연대보증인(들)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며, 전임자 의 연대보증 채무는 후임자가 조합으로부터 연대보증인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단, 후임자가 연대보증인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공동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공제규정 제12조 연대보증)
- 4. 연대보증서 작성일 당시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은 아래와 같으며, 공제사고 발생 시 최대 구상금 청구액 변경에 따라 채무최고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변경된 채무 최고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OF 래 -

A. 최대 구상금 청구액		채무최고액
(공제한도액의 50%)	B. 기 납부 담보금액	(A-B)
100,929,229,250	36,750,866,000	64,178,363,250

2025년 06월

23일

**연대보증인**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23-19

성 명 : 김충현

주민등록번호: 780128-1348516

연대보증인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1-370 루시드하운스 제비동 303호

성명: 김미자

주민등록번호 : 661106-2348516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신청인: 차준호(생년월일:1982,08,24).

0360 - 960 - 1

음성변환서비스 담당자: 이재혁 (전화:031-887-3962)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인감증명서 주 민 등 록 6 6 1 1 0 6 -许 o) 대 리 인 벍 2 3 4 8 5 1 6 ō 김미자 섯 명 이 (金美子) (한 자) 적 감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55, 비동 303호 (한남동,루시드하우스) 주 个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매 비카 (법인등록번호· (법인명·단체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욧 도 주 소 (사무소 • 사업장 소재지) 욧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도 (발급신청자) (서명) 의 비 비 77

1.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0 표시됩니다.

-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5.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 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6. 용도의 매도용란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 칸"으로 표시됩니다.
- 7. 용도의 일반용란에는 '은행제출용', 'CC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 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 주민 등록번호 및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의 성명 등 신청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 . 만급 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058 인가 등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급번호 No.960 여주시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북내면장

2025.6.25 60 (1위 BNM001 \_ 5 증지발행시각: 09:16:20.232

600원

[12004100911201675067001-010669338260655000410] 주소지 증명청 : 한남동(2/4)

210mm ×297mm(특수용지 80g/m²)

Page :

발급번호 Issueance Number 2025-200-660-001098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김미자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661106-2348516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55 비동 303호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상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가곡면 탕곡리 산 53-10 외 1건 [면적 9,082.0m']

Tax Objects

라세자치단체 :	강원 삼척시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재산세(토지)	2024-09	정기	350-020460	₩9,180	
도시지역분	2024-09	정기	350-020460	₩O	
지방교육세	2024-09	정기	350-020460	₩1,830	
소 계 a Sub-Total	가곡면 탕곡리 신	가곡면 탕곡리 산 53-10 외 1건 [면적 9,082.0㎡]			완납
재산세(토지)	2025			WO	과세사실없음
도시지역분	2025			₩٥	과세사실없음
지방교육세	2025			₩0 }	과세사실없음
합계 Total Amount(Won)				₩11,010	

# 발급담당자 : 황우영/02-2286-7209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2025년

05월 13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0 44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1/2> 4층501호

Address

(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성동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ities

1/4

발급변호 Issueance Number 상호

2025-200-660-001097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성명(법인명) Name(Name of 납세자 Corporation) TaxPayer 주소(영업소)

김미지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661106-2348516

Registration No.

Address(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55 비동 303호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용산구 한남동 1-370 B동 303호 외 11건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ks
지방소득세(종합소목	<del>=</del> ) 2024-05	신고	685-653869	₩3,079,970	과세표준액 : 1,143,850,726
소 계 a Sub-Total	용산구 2023년 귀	속분		₩3,079,970	완납
재산세(건축물)	2024-07	정기	. 560-000832	₩382,110	
도시지역분	2024-07	정기	560-000832	₩213,980	
지역자원시설세	2024-07	정기	560-000832	₩466,930	
지방교육세	2024-07	정기	560-000832	₩76,420	
소 계 a Sub-Total	영등포구 당산동4	가 80 SK V1센터	101호	₩1,139,440	완납
재산세(건축물)	2024-07	정기	560-000833	₩234,660	
도시지역분	2024-07	정기	560-000833	W131,410	
지역자원시설세	2024-07	정기	560-000833	₩254,680	
지방교육세	2024-07	정기	560-000833	₩46,930	
소 계 a Sub-Total	영등포구 당산동	1가 80 SK V1센터	102.호	₩667,680	완납

※ 발급담당자 : 황우영/02-2286-7209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2025년 05월 13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016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2가길 67 (마장동)

Address

(Business Office)



00345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SeongSu1GaJe2Dong

했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ities

Page: 2/4

발급번호 Issueance Number 2025-200-660-001097

납세자	/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김미자	주민(법인,외국인)등 Resident (Corporation, Registration No	Foreign) 661106-2348	516
TaxPayer Addr		주소(영업소) ess(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55 비동 (	303호 (한남동, 투시드하우	스)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Pemarks
재산세(건축닭	물)	2024-07	정기	560-000834	₩234,660	
도시지역분		2024-07	정기	560-000834	₩131,410	
지역자원시설	세	2024-07	정기	560-000834	W254,680	
지방교육서		2024-07	정기	560-000834	₩46,930	
소 계 a Sub-Tota	100	영등포구 당산	통4가 80 SK V1센트	103호	W667,680	완납
재산세(건축		2024-07	정기	560-000835	₩234,660	
도시지역분	1	2024-07	정기	560-000835	₩131,410	
지역자원시설	네세	2024-07	정기	560-000835	₩254,680	
지방교육서	I	2024-07	정기	560-000835	₩46,930	
소계 a Sub-Tota	***	영등포구 당산	동4가 80 SK V1센터	104ই	₩667,680	완납
재산세(건축		2024-07	정기	560-000836	₩234,660	
도시지역등	7	2024-07	정기	560-000836	₩131,410	
지역자원시설	걸 세	2024-07	정기	560-000836	₩254,680	
지빙교육시	#	2024-07	정기	560-000836	₩46,930	
소 계 a Sub-Tota	al	영등포구 당산	동4가 80 SK V1센터	리 105호	₩667,680	완납
재산세(건축		2024-07	정기	560-000837	₩234,660	
도시지역된	<u></u>	2024-07	정기	560-000837	W131,410	
지역자원시설	설 세	2024-07	정기	560-000837	₩254,680	
지방교육사		2024-07	정기	560-000837	₩46.930	
소 계 a Sub-Tota	al	영등포구 당산	동4기 80 SK V1센	티 106호	₩667,680	완남
재산세(건축		2024-07	정기	560-000838	₩234,660	
도시지역	분	2024-07	정기	560-000838	₩131,410	
지역자원시설	설세	2024-07	정기	560-000838	₩254,680	
지방교육	H	2024-07	정기	560-000838	₩46.930	
소계 a Sub-Tot	al	영등포구 당신	동4가 80 SK V1쉡	터 107호.	₩667,680	완넙
재산세(주		2024-07	정기	685-000453	₩5,150,700	

Page :

4]

2025-200-660-001097

issueance Number

발급번호

납세자 TaxPayer		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김미자	주민(법인,외국인)등 Resident (Corporation,I Registration No	oreign) 661106-234	8516
		주소(영업소) ss(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55 비동 3	303호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도시지역분		2024-07	정기	685-000453	₩1,912,990	
지역자원 <b>시</b> 설	세	2024-07	정기	685-000453	₩59,320	
지방교육서		2024-07	정기	685-000453	₩1,030,140	
소 계 a Sub-Tota	l	용산구 한남동	1-370 B동 303호		₩8, <b>1</b> 53,150	완납
주민세(개인	분)	2024-08	정기	685-005280	W4,800	
지방교육서	1	2024-08	정기	, 685-005280	₩1,200	
소 계 a Sub-Tota	1	용산구 김미자			₩6,000	완납
재산세(주틱	{)	2024-09	정기	685-000453	₩5,150.700	
도시지역는	<u> </u>	2024-09	정기	685-000453	₩1,912,990	
지역자원시설	설세	2024-09	정기	685-000453	<b>W</b> 59,320	
지방교육세		2024-09	정기	685-000453	W1,030,140	
소 계 a Sub-Tota	1	용산구 한남동	1-370 B동 303호		₩8,153,150	완납
재산세(토지	(1)	2024-09	정기	560-001383	₩1,340,460	
도시지역분	2	2024-09	정기	560-001383	₩718,870	
지방교육사	om Same optionism	2024-09	정기	560-001383	W268,090	
소 계 a Sub-Tota	a l	영등포구 당산 적 120.69㎡)	동4기 80 SK V1센	터 101호 외 6건 (면	₩2,327,420	완남
취득세		2024				과세사실없음
등록세		2024				과세사실없음
면허세		2024				과세사실없음
자동차세		2024				과세사실없음
도축세		2024				과세사실없음
레저세		2024				과세사실없음
담배소비/	네	2024				과세사실없음
종 합토지	H	2024				과세사실없음
주행세		2024				괴세사실없음
지방소비.	АН	2024				과세시실없음

발급번호 Issueance Number

2025-200-660-001097

납세자 TaxPayer		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김미자	주민(법인,외국인) Resident (Corporation Registration	on, Foreign) 661106-234	8516
		소(영업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55 비동 303호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방소비세(구서	(보)	2024				과세사실없음
등록면허세		2024				과세사실없음
사업소세		2024				과세사실없음
지역개발세		2024				과세사실없음
토지과다보유	세	2024				과세사실없음
취득세		2025				과세사실없음
등록세		2025				과세사실없음
면허세		2025	t			과세사실없음
주민세		2025				과세사실없음
재산세		2025				과세사실없음
자동차세		2025				과세사실없음
도축세		2025				과세사실없음
레저세		2025				과세사실없음
담배소비세		2025				과세사실없음
종합토지세		2025				과세사실없음
주행세		2025				과세사실없음
지방소비세		2025				과세사실없음
지방소비세(구/	세분)	2025				과세사실없음
등록면허서		2025				과세사실없음
사업소세		2025				과세사실없음
지역개발서		2025				과세사실없음
지역자원시설	설세	2025				과세사실없음
법인지방소득	두세	2025				괴세사실없음
지방소득서	1	2025				과세사실없음
토지과다보유	유세	2025				과세사실없음
합계 Total Amount(	Won)				₩26,865,210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신청인: 김충현(생년월일:1978.01.28).

0560 - 1961 - 1

**○● 1** 음성변환서비스

담당자: 이지연 (전화:02-2286-7285)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인감증명서 보 이 주 민 등 록 7 8 0 1 2 8 -대리 인 1 3 4 8 5 1 6 出 ठ 김충혂 섯 명 이 (金忠賢) (항 자) 감 ' 국 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23-19 주 소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매 비카 (법인등록번호・ (법인명·단체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용 주 소 도 (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용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玉 (발급신청자) (서명) 일반

1.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0 표시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자(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 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용도의 매도용란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 칸"으로 표시됩니다.

7. 용도의 일반용란에는 '은행제출용', '00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 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 주민 등록번호 및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의 성명 등 신청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 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이 o. 1961 »

77

의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25.08.24 N-AT222218 (XI

业 出

1479

10101 多玩家的 그효력을 보 증명은



서류발행일:

[52011106412200235090001-140369255260604100310] 주소지 증명청 : 가곡면(1/3)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200-660-001099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Issueance Number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김충현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780128-1348516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23-19 (탕곡리)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제중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상호

Company Name

용평면 재산리 산 1296-2 [면적 3,966.0m] 외 10건

과세자치단체 : 강원 삼척시

세목	부과년월	부과유형			비고
Tax Items	Tax Year-Month	Tax Pattern	Tax No.	Tax Amount	Remaks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24-05	신고	350-312153	₩1,077,890	과세표준액 241,966,158
소 계 a Sub-Total	2023년 귀속 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쿤(전자신고)	₩1,077,890	완납
자동차세(자동차)	2024-06	정기	350-011744	W300,000	
지방교육세	2024-06	정기	350-011744	₩90,000	
소 계 a Sub-Total	66다3501(비영업용,배기량:5000)[차령경감율:40%]			W390,000	완납
재산세(주택)	2024-07	정기	350-070183	W33,210	
도시지역분	2024-07	정기	350-070183	₩O	
지방교육세	2024-07	정기	350-070183	₩6,640	
지역자원시설세	2024-07	정기	350-070183	₩14,440	
소 계 a Sub-Total	가곡면 탕곡리 153 [연납]			₩54,290	완남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24-08	신고	350-000182	W1,077,710	과세표준액 241,966,158

※ 발급담당자 : 황우영/02-2286-7209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2025년

05월 13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0 4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0470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2가길 67 (마장동)

Address

(Business Office)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ities.



과세시실없음

과세사실없음

₩0

WO

H 5 0SC

2024

2024

a Sub-Total

등록면허세(등록)

지빙교육세

발급변호 2025-200-660-001099

Issueance Numbe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 780128-1348516 김충현 Resident (Corporation, Foreign) Name(Name of 납세자 Registration No. Corporation) TaxPayer 주소(영업소)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23-19 (탕곡리) Address(Business Office) 비고 세액 과세번호 부과유형 세목 부과년월 Tax Amount **Pemaks** Tax No. Tax Pattern Tax Items Tax Year-Month 소 계 완납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전자신고) W1,077,710 a Sub-Total W10.000 350-001726 정기 주민세(개인분) 2024-08 W1.000 지방교육세 2024-08 정기 350-001726 소 계 완납 2024년 개인분 정기분 (김충현) ₩11,000 a Sub-Total 350-034357 ₩70,150 정기 2024-09 재산세(토지) WO 350-034357 도시지역분 2024-09 정기 정기 W14,030 350-034357 2024-09 지방교육세 소 계 위납 가곡면 탕곡리 산 51 외 4건 [면적 108,091.0m] ₩84,180 a Sub-Total ₩275,000 350-038226 정기 자동차세(자동차) 2024-12 W82,500 350-038226 정기 지방교육세 2024-12 소 계 ₩357,500 완납 66다3501(비영업용,배기량:5000)[차령경감율:45%] a Sub-Total W15,000 신고 350-000274 등록면허세(등록) 2025-01 ₩0 350-000274 신고 2025-01 지방교육세 WO 신고 350-000274 2025-01 농특세 완납 소 계 ₩15,000 66다3501 SALGA3EF7EA195549 2014년식 레인지로버 5.0SC a Sub-Total 과세표준액 : ₩175,000 350-000067 신고 취득세(이륜차) 2025-03 3,500,000 WO 350-000067 선고 2025-03 지방교육세 WO 350-000067 신고 2025-03 농특세 서울성동가0741 WB10C0506GZ567798 2016년식 3륜이하소형자동차 완남 소 계 ₩175,000 BMW C650G1 a Sub-Total ₩15,000 선코 350-003585 2025-04 등록면허세(등록) ₩0 350 003585 선코 2025-04 지방교육세 WO 신고 350 003585 2025-04 농특세 86다3501 SALGAGEF/EA195549 2014년식 10 | 승용자동차 레인지로 윈님 ₩15,000 소 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2025-200-660-001099

Issueance Number

납세지 TaxPayer		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b>김</b> 충현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Foreign) Registration No.			8516
		주소(영업소) ss(Business Office)	ice)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23-19 (탕곡리)				
세목 Tax Items		무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Pernatks
농특세		2024				₩O	과세사실없음
취득세(이륜	차)	2024				₩O	과세사실없음
지방교육세		2024				WO	과세사실없음
농특세		2024				WO	과세사실없음
재산세(주택	()	2025				WO	과세사실없음
도시지역분		2025				WO	과세사실없음
지방교육서		2025				₩O	과세사실없음
지역자원시설		2025				WO	과세사실없음
주민세(개인	분)	2025				₩O	과세사실없음
지빙교육서		2025				WO	과세사실없음
자동차세(자동	통차)	2025				WO	과세사실없음
지방교육서		2025				WO	과세사실없음
지방소득세(종합	압소득)	2025				WO	과세사실없음
재산세(토지	: )	2025				₩0	과세사실없음
도시지역분	<u> </u>	2025				WO	과세사실없음
지방교육서	+	2025				₩О	과세사실없음
과세자치단체	: :	강원 평창군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Amount	비고 Pemaks
재산세(토지		2024-09	정기	350-010264	₩9.380		
도시지역분		2024-09	정기	350-010264	₩0		
지방교육사	4	2024-09	정기	350-010264		₩1.870	
소 계		용평면 재산리	산 1296-2 [면적	3 966 0 m ]		W11,250	완님
a Sub-Tota 재신세(토기		2025				WO	과세시실없음
도시지역		2025				₩0	과세사실없음
지방교육/		2025				₩O	과세사실없음

Page :

4/4

발급번호 2025

2025-200-660-001099

Issueance Number

닙세자 T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김충현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Foreign) 780128-1348516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623-19 (탕곡리)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Pernarks	
합계 tal Amount(Wo	on)			₩3,268,820		

## 확 약 서

###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 1. 당 사는 청약철회 · 해약 · 행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2. 당 사는 직권해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3. 당 사는 공제조합에서 해약 업무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반서류 제출을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4. 당 사는 공제조합의 해약 업무 등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 이행 시 조합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이행하겠습니다.

- 아 래 -

- 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1년간)
- 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해당월의 총 선수금에 대하여 2%의 위약금 부과
- 5. 당 사는 상기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 및 위반 시공제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06월 23일

회사명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대표자 김 충 현 연락처 02-6233-7924



## 서 약 서

##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

- 1. 당사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 2. 당사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후에도 공제조합에서 당 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고,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되어 정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정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3. 당사는 공제조합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제업무를 불성실 이행 시 조합의 보정 요구 및 조치 등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겠으며,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조합에서 즉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감수하겠습니다.
- 4. 당사는 상기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 및 위반 시 조합의 공제계약 중지·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06월 23일

회사명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대표자 김 충 현 ( 연락처 02-6233-7924



# <u>계 좌 신 고 서</u>

은행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용도
신한은행	보통예금	100-025-106191	보람상조피플(주)	CMS출금용외

본 회사의 CMS 출금계좌를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법인 보람상조피플 주식회

한국상조공제조합 귀중